

고사 제 二四二호

도로. 관. 나. 창. 계획 도로 추가 결정 고사 이 건

고사 계획의

# 부지

관 면  
 기일부  
 호

시정상주의

안입  
 년 1971년 8월 5일  
 제

합  
 일  
 총  
 호

시

부지

부지

91.8.21  
 용우

내부  
 국장

중무과  
 과장

문서계

국  
 관  
 리  
 과

사무  
 계  
 기  
 안  
 자

건설국

최  
 장  
 경

도시계획  
 과  
 장

계획  
 과  
 장

91.8.23  
 개

도로관리청계획도로 추가결정고시에 관한 건

주제 의견에 관하여는 단기(4.3.1)년 11월 17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8-188호(1971.8.18)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8-185호(1971.8.18)를 참조하시라

후속차에 걸쳐 중구 권역(中區全域)의 도로관리청계획도로를 결정고시하여 실시하여 모든바 금반월 등 1가 35

반지내에 별지계획도 와 같은 도로가 필요하와 본도  
로 도로관리청계획도로로 추가하여 결정고시하  
고 뒤 결재를 앙청하나나

참조

市街地新設令 技 第 三 十 七 條 第 二 項

道路의新設 또는 變更의 計畵이 있을 때 行政方이 其計  
畵을 告示하였을 때는 其計畵 道路는 이를 道路로  
做한다

서울특별시장시제(四二)호

항의구명

시가지계획령제(三九)조제(三)항에의하여도로관

리청계획도로를좌기외같이추가결정한다.

단기(四三九)년(九)월(二)일

서울특별시장 허정

기

一 위 치 서울특별시장시공구

동명	특원별면장 (미하)				계	특원별면장 (평방미터)				계	비고
	一	二	三	四		一	二	三	四		

一	특원별면장 (미하)				계	특원별면장 (평방미터)				계	비고
	一	二	三	四		一	二	三	四		

계	특원별면장 (미하)				계	특원별면장 (평방미터)				계	비고
	一	二	三	四		一	二	三	四		

우관제도면은건설국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공람에공한다.

(안 三)

년 월 일

부시강

공구청장 앞

건 명

귀주 관내 필동 1가 35번지 내 에 별지 와 같이 드로  
관 리 청 계 획 도 르 를 후 가 하 여 결 정 고 시 하 였 기 분  
전 시 행 에 만 권 을 기 하 시 앞

안 4 (권부 첨부)

(별첨 하 는 마 시 문 들 권 부 등 합 하 시 )

(안 四)

부시장

각국 청장

(제청구건)

병

알

두레의 건 별지와 같이 부가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오

(별지은 고시문을 첨부할 것)

(안 5)

건설국장

내무국장

알

건 병

두레의 건 별지와 같이 고시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

하여 주심을 부망 하나니

(별지은 고시문을 첨부할 것)